

## 개발도상국 투자에서 MIGA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고찰

유 병 옥\*

- 
- I. 서 론
  - II. 해외투자위험과 우리나라의 해외투자현황
  - III. MIGA의 개요
  - IV. MIGA협약에서의 분쟁해결제도
  - V. 결 론

---

주제어 : 다자간투자보증기구, 정치적 리스크, 해외투자, 중재, 조정

### I. 서 론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금융위기가 지속되는 중에도 경기회복세가 엿보이고 있으며, 중동이나 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자원이나

---

\*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산업설비분야 및 다양한 복구사업 등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성장이 두드러지며, 두바이나 카자흐스탄 등 중동 및 칠레 등을 포함한 중남미의 신흥국시장이 부상하고 있다.<sup>1)</sup> 투자자 혹은 투자국가는 국가간의 통상마찰이나 수입규제 등을 회피하여 잉여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며, 피투자국은 부족한 자본의 유입을 통하여 새로운 산업의 육성이나 수입대체 혹은 무역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해외투자자에게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국제투자는 외국의 주식이나 증권의 취득, 기업운전자금의 대부, 기술이나 서비스의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투자, 첨단 기술개발사업에의 투자, 해외에서의 기업투자활동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sup>2)</sup>

해외투자의 다양한 기회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투자를 저해하는 문제는 해외투자 상에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의 문제이다. 투자유치국에서는 적극적인 해외자본 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혜택을 약정하지만 한편에서는 더 이상의 투자유치가 필요 없게 되면 약정된 혜택을 축소하거나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다.<sup>3)</sup>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투자위험에 대한 리스크 완화하는 방법으로 자국내의 무역보험제도나 국제기관인 다자간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 이하 'MIGA')에 의한 보험이나 보증서비스를 들 수 있다. MIGA에서 제공하는 리스크완화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정치적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게 된다.

최근에 한국은 세계은행그룹 소속의 국제기구인 MIGA의 서울사무소를 유치했다. MIGA의 서울사무소유치를 통하여 한국의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프로젝트와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세계자원관련 에너지, 자원시장의 전망과 자원개발은 생산과 소비지역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자원분포환경과 기술발전에 따른 에너지 개발추이 변화양상 및 국제적 자원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불안이나 정치적 위험 및 자원확보 경쟁으로 인하여 에너지자원이 고가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인 자원확보 경쟁은 첨단 기술 및 막대한 자본으로 자원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다국적 에너지 그룹(엑손모빌, 쉘, BP 등), 중국을 포함한 풍부한 외환보유고로 공격적 자원투자를 경쟁 및 국가정부의 지원하에 해외투자 확대하는 환경 속에서 경쟁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서정두, 무역상무, 탐북스, 2011. 9, p. 455.

3) 김상만, 국제거래법, 도서출판 두남, 2011. 2, p. 424.

실제로 유럽의 오스트리아는 2004년 비엔나사무소를 설치한 이후 MIGA 제1의 활용국으로 부상하는 등 MIGA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sup>4)</sup> 최근의 한국의 MIGA 서울사무소 유치는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를 위한 리스크관리가 용이하고 금융조달이 원활 및 대규모 장기 해외사업에 MIGA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MIGA의 기능과 역할을 고찰하고 MIGA 협약 상의 분쟁해결을 위한 문헌연구중심으로 살펴보고 법리적 규칙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의 국외투자자들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서비스와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MIGA의 기능과 활용을 위한 이해 및 국제투자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적절한 대응력을 제시하고자 한다.

## Ⅱ. 해외투자위험과 우리나라의 해외투자현황

### 1. 해외투자위험과 정치적 리스크

해외투자관련 리스크는 대규모 및 장기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기에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다. 특히 해외투자의 개시부터 투자사업의 종료에 이르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다.

첫째, 해외투자의 개시 및 과정 중에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해외투자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보위험(Information Risk)이다. 시장환경이 열악한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가 신용등급이 높지 않으며 기투자자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투자를 위한 시장진출을 위한 정보와 경험이 부족하다.

둘째, 투자사업의 개시와 진행 상 자금조달에 관한 금융리스크이다. 해외투자에서 자금의 조달능력은 성공여부를 결정한다. 합작법인의 설립을 통한 다수 투자자들의 지분출자나 금융대출 및 대외채무보증을 활용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도 가능하다. 해외투자의 높은 부가가치창출에 따라

4) 뉴시스, “세계은행 국제투자보증기구 서울사무소 출범”, 기사등록 2012. 6. 4.

각국은 해외투자에 적극적이다. 정부차원에서 프로젝트금융 지원을 확대하거나 보증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한다. 특히 아시아나 중동 지역을 진출하는 해외투자자를 위한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투자사업의 미완성이나 지연 및 기대효과 미흡으로 인한 투자사업실패의 위험이다. 해외투자의 타당성을 포함하여 사업의 진행과 완성이 지연되거나 예상투자비를 초과하는 비용발생 등으로 인한 사업실패에 대한 위험을 안고 있다. 사업실패의 위험은 사업 전체의 수익성과 사업의 지속적 수행여부와 밀접하다.

이와 같은 리스크들은 정보부재의 위험이나 금융조달위험 및 투자의 미완성 위험 등은 자기통제(self regulation)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해외투자위험요소이다. 왜냐하면 투자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주의를 통하여 위험요소의 정도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투자자의 자기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는 해외투자 위험요소가 정치적 리스크다. 정치적 리스크는 일반적인 상사위험과 달리 위험의 심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으며, 회피가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전쟁이나 국가에 의한 몰수, 해외 송금제한, 예상할 수 없는 국가정책변경이나 기타 정치 및 사회·경제적 변화는 투자자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안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투자를 수행하는 투자자들은 피투자국의 정치적 위험요소를 완화시키기 위한 대응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피투자국 정부의 지원과 보증을 확약받을 수 있으며, 정치적 위험을 보험이나 보증서비스를 통하여 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다. 특히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피투자국의 지원 및 사업보장은 해외투자의 성공여부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sup>5)</sup>

## 2.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현황과 추이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1980년대까지는 별다른 증가추세를 보여주지 못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증대하면서 2012년 투자금액은 약 23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5) 이태경 외 6인, “해외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방안 연구”, 지식경제부, 2012. 8. 31, p. 39.

〈표 1〉 1980년 이후 우리나라 해외투자 현황

(단위: 건, 개, 천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1980	496	352	275,057	511	145,196
1985	70	39	219,390	125	112,966
1990	906	346	2,380,132	975	1,068,813
1995	2,507	1,345	5,327,602	3,500	3,219,676
2000	3,942	2,115	6,214,545	5,626	5,259,444
2005	8,859	4,447	9,681,159	16,390	7,228,863
2010	8,084	2,887	34,353,175	13,715	24,366,221
2011	7,861	2,760	45,530,749	13,340	26,490,836
2012	7,534	2,471	39,007,924	12,177	23,163,980
총합계 (1980~2013.3)	121,602	54,628	334,569,155	204,112	220,454,750

주 : 1980년 자료는 1968년부터 1980년까지의 누계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1980년 약 1억4천5백만 달러이었던 해외투자를 1997년이후의 외환위기 및 세계경제위기라는 일시적 침체기를 제외하고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선진공업국으로의 해외투자는 수출시장 장벽의 우회적 방안으로써 해외투자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선진공업국의 높은 기술과 노하우를 통한 경쟁력 증대를 위하여 꾸준히 해외투자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증대되어 왔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으로의 해외투자는 신규시장 진출 및 저렴한 임금과 시장잠재력 그리고 원자재의 확보 등이 해외투자의 동기로 작용하였다. 특히 중국이나 홍콩 베트남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대한 해외투자가 꾸준히 증대되고 있으며, 주요 해외투자국으로서 동남아시아는 주요 해외투자처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처로서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 시장 그리고 거대한 자본이 요구되는 플랜트시장으로서 중동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등과 같은 산유국에서 정유, 석유화학관련 플랜트 발주가 꾸준히 있기에 기술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우리나라의 플랜트 업체들의 수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sup>6)</sup>

### Ⅲ. MIGA의 개요

#### 1. MIGA의 의의

다자간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 MIGA)는 세계은행 그룹 산하의 기구로서 1985년 IMF/IBRD의 연차총회에서 기구의 설치 결정되어 1988년 6월에 설립되었으며, MIGA 회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해외투자자와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sup>7)</sup>

MIGA는 세계은행그룹과 IMF 및 기타 국제개발금융의 활동을 보완하고, 회원국간 특히 개발도상국으로의 생산적 목적의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할 목적이 있다.<sup>8)</sup> 특히 개도국 투자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여 민간투자자의 개발도상국 투자를 촉진하며, 투자자와 피투자국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객관적이 제3의 조정자 역할로서 피투자국 정부 정책에 대한 포괄적 투자 보호를 가능하게 한다.<sup>9)</sup>

2013년 3월 12일 현재 MIGA는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의 대륙별 주요국들을 포함한 선진국 25개국, 한국<sup>10)</sup>이나 중국, 베트남 등을 포함한 개발도상국 154개국 등 총 179개국이 회원국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 2. MIGA의 구성과 역할

##### 1) MIGA의 구성

MIGA의 조직은 총회(council of governors), 이사회(board of directors) 및 실무 집행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총회는 최고이사결정기구로서 각국의 대표 1인과 교체대표(alternate) 1인으

---

6) 이태경 외 6인, 상계서, 2012. 8. 31, pp. 26~27.

7) MIGA 협약 서문 참조.

8) 강길환, “국제금융기관에 관한 이론적 고찰”, 경기교육논총 제5호, 경기대학교, 1996, p. 98.

9) 이태경 외 6인, 상계서, 2012. 8. 31, p. 189.

10) 한국은 1988년 4월 12일 회원국으로 가입.

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12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회원국 수의 변동에 따라 이사의 수도 변경이 가능하다. 이사회의 의장은 IBRD 총재가 겸직하고 있다.

이사의 투표는 다수결로 결정되며, 만약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투표권이 결정투표가 된다. 이사회는 MIGA의 총재(present)를 임명하게 되며, 기구의 일반 활동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 총재는 MIGA의 업무를 지휘하며 조직운영의 책임을 진다.<sup>11)</sup>

## 2) MIGA의 역할

### (1) MIGA의 주요 서비스

MIGA의 주요 업무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보험 및 보증서비스, 국제협력과 조사, 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의 분쟁해결이다.

첫째, 투자 유치국 통화의 교환성 통화로의 환전 제한 및 국외송금제한, 투자자의 권리 및 이익의 박탈, 그리고 전쟁이나 시민 소요 등 비상업적으로 인식되는 위험과 계약위반 및 불이행위험 등에 대한 보험 및 보증서비스이다.<sup>12)</sup>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의 해외투자시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한 고위험 중 하나가 정치적 리스크다.

MIGA는 개발도상국의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보험담보를 제공하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의 촉진과 분쟁해결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 보험을 제공한다. 특히 제어할 수 없는 정치적 리스크는 세계은행 등 다자간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 MDB)이 활동되며, MIGA는 정치적 리스크보험을 제공한다.<sup>13)</sup> MIGA는 민간보험회사와 보험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11) 다만, 총재는 이사회의 감독 하에 있다. 오원석·김용일, “국제투자계약에 따른 위험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18권 제2호, 2008. 8, pp. 160~161.

12) 계약불이행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손해보험의 성격을 갖으며 다만, 인위적 사고로 인해 투자자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우연한 사고에 기한 보험서비스의 원리와는 구별될 수 있다.

13) Paul E. Comeaux, N. Stephan Kinsella, “Reducing Political Risk in Developing Countries: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Stabilization Clauses, and MIGA & OPIC Investment Insurance”, *Digest of Commercial Laws of The World*, New York Law

오히려 민간보험부분에서는 시장리스크를 담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보험에서 담보하기 어려운 정치적 위험에 대해서만 MIGA가 담보하도록 하여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sup>14)</sup>

MIGA를 이용할 수 있는 적격 투자자는 정부 또는 민간이 모두 이용 가능하며, MIGA 회원국 소속이어야 한다. 피투자국이 개발도상국인 경우에만 즉, MIGA 회원국인 개발도상국 투자사업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sup>15)</sup>

둘째, 해외직접투자 및 정치적 리스크에 관한 정보 및 개발도상국 내에서 투자기회에 관한 정보의 제공 그리고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회원국의 무역보증기관과 협력 하에 공동보증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증업무에 대한 협력이다.

MIGA는 2010년 3월 우리나라의 수출입은행과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민간 차원의 투자촉진을 위한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sup>16)</sup>하는 등 국제적 협력관계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투자 지원 및 전반적인 업무조율을 협력, 상호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 분쟁의 해결 등을 수행하고 있다. 피투자국 정부의 계약위반이나 수용 등의 이유로 투자자와 피투자국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MIGA는 알선(good offices)을 통하여 당사자들의 책임여부를 밝히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만약 투자자와 피투자국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MIGA 보험계약에 의하여 투자공사가 클레임을 요청한 경우에는 분쟁사실을 검토한 후에 공식결정을 내린다. 즉, MIGA가 투자자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계약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며, MIGA는 당 기구의 설립 근거인 국제협약에 따라 해당 피투자국에 변상을 요구할 대위권을 갖는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이 성립된 투자프로젝트에 관한 분쟁이 아닌 경우에도

School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1994, p. 31.

14) 이태경 외 6인, 상계서, 2012. 8. 31, p. 190.

15) 만약에 미얀마지역이 신흥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할지라도 미얀마는 MIGA 회원국이 아니므로 MIGA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미얀마가 국제사회와의 관계회복 노력과 MIGA 회원국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할지라도 MIGA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국이어야 한다.

16) MIGA, 보도자료, 2010/145.

선택적으로 조정서비스를 제공한 사례가 있으며, 이 경우 MIGA는 현금 비용에 대한 보상만 요구한다. MIGA의 조정서비스는 중재와 같은 비용과 시간 등이 많이 소요되는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재보다 비교적 자유로운 격식과 절차를 거치며, 중재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실용적인 외교적 해결책과 고비용의 중재에 따른 분쟁해결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sup>17)</sup>

### 3. MIGA와 우리나라 무역보험제도<sup>18)</sup>

세계은행 그룹 내에서 MIGA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기관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MIGA와 마찬가지로 해외투자관련 리스크에 대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IGA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투자자 리스크에 대한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민간투자자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주요한 설립목적이다. 주로 선진 자본 투자자를 보호하는 면이 있으나 개발도상국의 사회기반시설의 조성 및 경제발전기반을 위한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적 신뢰기관에 의한 보험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공공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반면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사업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투자기업이나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및 투자를 전방위로 지원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즉,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국내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고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업적 성격이 부각된다.

MIGA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는 피투자국 정부의 정치적 위험에 대해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IGA는 개발도상국의 정치적 위험에 대한 보험담보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투자의 촉진 그리고 분쟁해결을 제공한다.

17) 정태식, “해외부동산투자시 필요한 MIGA”, 2010.10. 27, <http://blog.daum.net/sejongsi/11731767> 웹자료 참조.

18) 이태경 외 6인, 상계서, 2012. 8. 31, p. 214~218.

MIGA는 상업적 위험을 담보하는 민간의 보험회사와는 비경쟁적이며, 오로지 정치적 위험을 담보하므로 민간보험시장과 MIGA는 상호 보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정치적 위험뿐만 아니라 상업적 위험까지 모두 담보하는 성격이 있다. 수출자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신용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를 포함하여 시장의 상업위험을 포함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투자를 한 후 투자대상국에서의 정치적 위험으로 인하여 원리금이나 배당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보증채무이행 등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해외투자에 따른 정치적 위험으로부터 대한민국 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함으로써 적극적인 해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를 향유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내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MIGA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투자자나 금융기관은 MIGA 회원국의 개인이나, 기업 또는 정부가 가능하다. 즉, MIGA는 회원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다.

MIGA 서비스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도상국 등의 모든 투자 유형으로서 주식이나 대출, 보증, 차관 등을 포함하며 분쟁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장기 저리의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MIGA는 담보하는 위험은 정치적 리스크만을 적용하므로 세계적인 보증서비스가 아니며, 상업적 리스크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수요는 제한적이다.

반면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기업의 투자와 수출을 촉진하고 확대시키고자 하는 보험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정치적 리스크는 물론 상업적 리스크까지 포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갖는 국내에 제한적인 서비스라는 한계와 함께 지원 규모 및 금융경쟁력의 한계는 본질적인 취약성으로 인식되고 있다.

## IV. MIGA 협약에서의 분쟁해결제도

MIGA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우호적인 해결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클레임을 제기되는 경우 MIGA는 클레임을 검토하고 클레임에 대한 가능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투자관련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기 때문에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에 특히 집착을 갖는다.<sup>19)</sup>

MIGA가 피투자국 정부와 같은 위치로서 투자자의 요구에 반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MIGA는 투자자의 클레임을 검토하기에 보다 나은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MIGA의 의한 평가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와 경험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투자자와 피투자국 간의 충돌을 완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투자자와 피투자국 사이의 만족스러운 배상이라는 점에서 완벽한 조화가 어렵다 할지라도 투자촉진과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의 필요와 이익의 관점에서 MIGA는 우호적인 분쟁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잠재적 능력으로 이용될 수 있다.

실재적으로 MIGA 협약에서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자간투자보증기구는 투자자와 피투자국사이의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0)</sup> MIGA 협약에서는 MIGA와 회원국간의 분쟁이나 MIGA와 회원국이 아닌 국가사이의 모든 분쟁에 본 협약 규정에 따른 분쟁해결을 규정하고 있다. MIGA는 투자자의 대위권자로서 청구금에 관한 분쟁은 본 협약의 부속서 규정에 의해 해결된다. 전통적으로 해외플랜트 분야에서는 소송보다는 ADR에 의한 분쟁해결을 선호한다.<sup>21)</sup> 만약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을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을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MIGA의 위원회에 의해 사전에 승인되어야 한다.

19) 최명국, “FIDIC의 DBO 프로젝트용 표준계약조건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46권, 2010. 5, p. 42.

20) MIGA 협약 제23조 b항.

21) 최명국, “해외건설공사 분쟁에서 ODR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59권, 2013. 8, p. 43.

## 1.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금융상의 활용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MIGA는 보증금을 지급한 이후 손해를 본 투자자가 피투자국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대위권을 가진다.<sup>22)</sup> MIGA 협약에서는 다자간투자보증기구가 달리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궁극적으로 국제중재를 통하여 그와 같은 대위권의 집행을 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sup>23)</sup>

본 협약에 따른<sup>24)</sup> 부속서 2편에 의한 분쟁해결은 분쟁의 당사자들이 우선 조정이나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이전에 협상(negotiation)에 의해 분쟁의 해결을 시도하여야 한다. 협상은 협상이 청구된 날로부터 120일의 기간 이내에 해결을 구하도록 기간제한을 하고 있으며, 만약 분쟁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협상을 충분히 수행한 것으로 추정한다.<sup>25)</sup>

분쟁의 당사자들에 의해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 일방당사자는 본 협약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sup>26)</sup> 다만 분쟁당사자들의 상호합의에 따라 본 규칙에 따른 조정절차를 우선 고려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조정을 구하는 합의는 분쟁의 사안을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의 청구와 관련하여 가능한 경우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된 조정자에게 조정을 제기할 수 있다. 조정자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분쟁당사자들은 함께 연합하여 ICSID(International Center of Settlement of Investment

---

22) Ibrahim F.I. Shihata, "The Settlement of Disputes Regarding Foreign Investment: The Role of the World Bank,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ICSID and MIGA", *America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Review*, volume 1, 1986, pp. 113~115.

23) MIGA 협약 제57조에 따라 다자간투자보증기구와 회원국사이의 분쟁에서 본 협약의 부속서 2편의 규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다자간투자보증기구는 투자자의 대위자로서 행위하며, 본 협약에서 규정하는 분쟁해결에 관하여 절차를 구성하거나 분쟁해결을 위한 대안적 해결방법에 관하여 다자간투자보증기구와 회원국 사이에 합의할 수 있다. 합의의 원칙은 관련 회원국의 관할권에서 이행되기 전에 본 다자간투자보증기구의 위원회에 의해 다수결로 승인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24) MIGA 협약 제57조.

25) MIGA 협약 부속서 제2편 제2조.

26) MIGA 협약 부속서 제2편 제3조 a항 및 제4조.

Disputes) 사무총장이나 ICJ(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의장에게 조정자를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조정절차는 조정인이 조정을 구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90일 이내에 지정되지 않는다면 종료된다. 27)

MIGA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된 경우 혹은 분쟁당사자들의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정자는 조정절차를 규율하는 규칙을 결정하여야 하며, 국가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ICSID)에 따라 수용되는 조정규칙에 다를 것을 제시하여야 한다.<sup>28)</sup> 분쟁의 당사자들은 조정자에게 성실히 협력하여야 하며, 특히 모든 관련 정보와 문서를 조정자에게 제공하여 조정자가 분쟁해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9)</sup> 분쟁의 당사자들은 조정자에게 정보나 문서를 제공하는 경우에 분쟁 관련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정자는 조정자가 지정된 날로부터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중에, 분쟁당사자들 간의 논쟁사안에 대한 진행과정에 대한 기록과 문제에 관한 상세 보고서를 제시하며,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sup>30)</sup> 또한 분쟁의 당사자의 경우에는 조정에 따른 분쟁해결을 관한 보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보고서에 관한 수용여부와 관련한 당사자의 의견을 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sup>31)</sup>

조정절차에 있는 분쟁당사자들은 조정 중에는 중재를 제기할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다만, 조정자가 조정인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조정보고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혹은 분쟁당사자들이 조정보고서를 수령한 이후 60일 이내에 조정보고서의 내용에서 언급된 조정안을 모두 수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조정보고서에 관하여 분쟁당사자들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교환한 이후 조정보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모든 분쟁사안의 해결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나 당사자들 중 일방이 조정보고서를 수령한 이후 60일이 지나도록 타방당사자에게 조정안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명시하

---

27) MIGA 협약 부속서 제2편 제3조 b항.

28) MIGA 협약 부속서 제2편 제3조 c항.

29) MIGA 협약 부속서 제2편 제3조 d항.

30) MIGA 협약 부속서 제2편 제3조 e항.

31) MIGA 협약 부속서 제2편 제3조 f항.

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sup>32)</sup>

한편 조정인에 대한 조정수수료는 세계은행 그룹내 주요 기구의 하나인 ICSID 조정에 적용하는 수수료외 기타 조정관련 비용을 참조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정에 따른 수수료와 조정과정에서 발생한 기타 비용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들에 의해 공평하게 부담되도록 하며 각각의 분쟁당사자는 발생한 조정인 수수료와 기타 비용에 대하여 자체 부담하게 된다.<sup>33)</sup>

## 2.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 1) MIGA와 국가간 분쟁해결

MIGA와 외국국사이의 분쟁은 MIGA가 투자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투자자의 대위자로서 행위하게 된다.<sup>34)</sup> 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 당사자들은 중재를 제기할 수 없다.<sup>35)</sup> 중재절차는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구하는 일방당사자에 의한 타방당사자에게 분쟁의 통지의 방법으로 시작된다. 중재의 통지는 분쟁의 성격을 특정하여야 하며, 구제의 방법을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청구인에 의해 지정된 중재인의 이름을 포함한다.

피신청인은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신청인에 의해 지정된 중재인의 이름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분쟁의 양당사자들은 2번째 중재인이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의 중재인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3의 중재인은 중재판정부의 의장중재인으로서 행위하게 된다.<sup>36)</sup> 만약 중재판정부가 통지

---

32) MIGA 협약 부속서 제2편 제3조 g항.

33) MIGA 협약 부속서 제2편 제3조 h항.

34) MIGA 협약 제57조.

35) MIGA 협약 부속서 제2편 제3조 g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인이 조정안의 제시가 일정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혹은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정안을 일정기간 이내에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조정안에 대한 양 당사자들의 의견이 교환된 이후 일정기간 이내에 모든 분쟁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 또는 조정안의 수령후 일정기간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일방당사자의 견해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재인을 지정하지 못하거나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여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동으로 청구하여 ICSID 사무총장에 의하여 지정되어야 한다.

만약에 당사자들이 합동으로 청구하지 않는 경우이나 혹은 ICSID 사무총장이 당사자들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인의 지정을 못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ICJ의 총재에게 중재인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sup>37)</sup> 중재판정부는 의장중재인이 결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첫 모임을 가져야 하며, 이때 중재판정부는 관련 모임을 장소와 시간을 결정하여야 한다.<sup>38)</sup>

분쟁에 대한 심문이 일단 개시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당사자도 지정된 중재인을 변경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의장중재인을 포함한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이 사임을 하거나 중재수행능력이 없는 경우 혹은 사망한 경우에는 대체중재인을 전임자의 지정방법에 따라 지정되어야 한다. 대체중재인은 이전의 중재인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부담한다.<sup>39)</sup>

MIGA 협약 부속서에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나 혹은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재판정부가 중재의 절차를 결정하여야 하며, 국가간에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적용되는 중재규칙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40)</sup>

중재판정부는 자체관할결정권을 판단하여야 한다.<sup>41)</sup> 다만, 중재판정부에 관련 분쟁이 본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제로서 위원회나 이사회의 관할 내에 있는 분쟁이라거나 혹은 사법관할의 분쟁 혹은 본 협약의 부속서 제1조에 따라 당사자들이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는 중재기관을 구성하는 경우로서 그 효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될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

36) MIGA 협약 부속서 제2편 제4조 a항.

37) MIGA 협약 부속서 제2편 제4조 b항.

38) MIGA 협약 부속서 제2편 제4조 d항.

39) MIGA 협약 부속서 제2편 제4조 c항.

40) 국가와 국가간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해결조약(BIT)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41) 관할권과 실체법의 관한 사안은 종종 다른 시간적 규칙이 적용되기도 한다. 황지현·박은옥, “국제투자분쟁에서 중재판정시 투자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59권, 2013. 8, p. 69.

가 그 이의제기에 대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에 의해 본 협약의 위원회나 이사회 또는 관련 중재기관에 제시되어야 하며, 결정이 나면 중재판정부를 구속하게 된다.<sup>42)</sup>

중재판정부는 본 부속서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분쟁에 관하여 본 협약의 규정과 분쟁의 당사자들에 의한 모든 합의와 다자간투자보증기구의 내규와 규정 및 적용 가능한 국제법과 투자계약에 적용 가능한 규정으로서 회원국의 국내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다자간보증기구와 회원국이 공정과 선의 원칙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히 중재판정부는 공정과 선의 원칙에 따라 분쟁을 결정할 수 있다.<sup>43)</sup> 중재판정부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공정한 심문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의 모든 결정은 다수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정의 근거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적어도 2인 이상의 중재인에 의해 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재판정의 사본은 각각의 분쟁당사자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중재판정은 최종적이며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이때 최종적 구속적 중재판정은 무효, 항소, 변경되지 않는다.<sup>44)</sup>

만약에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재판정의 범위나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야기되는 경우 당사자는 중재판정이 제시된 이후 60일 이내에 제시된 중재판정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의장에게 서면신청서를 통하여 중재판정의 해석을 구할 수 있다.

이때 의장중재인은 제시된 중재판정의 중재판정부에 요청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수령 후 60일 이내에 중재판정부를 소집하여야 한다. 만약에 중재판정부의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본 협약 부속서에 따라 새로운 중재판정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해당 중재판정부는 제시된 중재판정의 집행을 청구받은 중재판정의 해석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보할 수 있다.<sup>45)</sup>

42) MIGA 협약 부속서 제2편 제4조 f항.

43) MIGA 협약 부속서 제2편 제4조 g항.

44) MIGA 협약 부속서 제2편 제4조 h항.

45) MIGA 협약 부속서 제2편 제4조 i항.

모든 회원국은 회원국내 법원의 최종판결과 같이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구속적이며 집행력을 갖는 것으로 본 협약의 조항에 따라 제시된 중재판정은 회원국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판정의 이행은 관련 국가의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법에 의해 규율된다. 다만, 집행에 따른 주권면책에 따른 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하는데 있어서 법적장애가 존재해서는 아니 된다.<sup>46)</sup>

한편 중재인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보수는 ICSID 중재에 적용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당해 합의에 따르며, 기본적으로 각각의 당사자는 중재절차 중에 발생하는 자신의 비용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판정부의 비용은 중재판정부가 달리 결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들이 동등한 비율로 부담한다.<sup>47)</sup>

## 2) 담보계약에 관한 MIGA와 투자자간 분쟁해결

MIGA협약에서 담보계약에 관하여 야기되는 모든 분쟁들은 중재로 제기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48)</sup> 특히 투자자와 MIGA가 담보계약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MIGA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하기로 제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담보계약상 분쟁에 관하여 이를 해결하는 중재규칙(Rules of Arbitration for Disputes under Contracts of Guarantee)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sup>49)</sup>

본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규칙은 담보계약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적용된다. 중재를 원하는 신청인은 신청인이 헤이그 소재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통지서에는 반드시 날짜와 함께 당사자의 서명이 되어야 한다.<sup>50)</sup> PCA 사무총장에게 송부하는 통지서는 분쟁의 당사자들이 함께 제공할 수도 있다.

46) MIGA 협약 부속서 제2편 제4조 j항.

47) 중재판정부의 비용의 분배와 관련한 문제 혹은 관련 비용의 지불에 관한 절차는 중재판정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MIGA 협약 부속서 제2편 제4조 k항.

48) MIGA 협약 제58조. 본 조는 담보계약뿐만 아니라 재보험계약의 경우에도 중재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49) MIGA, Rules of Arbitration for Disputes under contracts of guarantee, Art. 1.

50) MIGA, Rules of Arbitration for Disputes under contracts of guarantee, Art. 3.1.

관련 통지서의 내용은 특히 분쟁의 각 당사자와 그 주소, 중재관련 당사자의 합의를 포함한 계약규정 및 분쟁 문제와 관련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기타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중재인의 수나 중재인의 지정방법 등 기타 분쟁해결 관련 합의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무총장은 중재기록부에 통지서를 등록하며, 분쟁의 피신청인에게 통지사본을 전송한다.

중재진행을 위한 중재판정부의 구성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다.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수와 중재인의 선정방법에 대한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당사자에 의해 지정된 하나의 중재인과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지정된 중재판정부 의장인 제3중재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더불어 중재통지 등록 이후 90일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으면 사무총장은 일방당사자의 요구로 중재인을 지정한다. 다만, 분쟁해결 과정에 이전의 중재인이나 조정인으로 행위했던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으로 지정될 수 없다.<sup>51)</sup> 중재판정부의 구성 인원은 단독 중재인 혹은 홀수의 중재인으로 그 수를 구성하여야 한다.

중재인은 그 자격으로서 높은 인품과 함께 독립적 판단 경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하며, 금융이나 산업, 상업, 법류 분야의 적격을 갖춘 당사자여야 한다. 이때 본국과 피투자국가의 국적자는 제외된다.<sup>52)</sup> 만약에 선정된 중재인이 이후 자격의 결격사실이나 부적격임을 근거로 중재판정부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 당사자는 즉시 중재절차의 정지가 선언하고 PCA 사무총장에게 그 이유를 진술한 자료를 제시한다. 중재인의 부자격에 대한 결정은 중재판정부의 다른 멤버에 의해 이루어진다. 나머지 중재인들의 의견이 동수로 나뉘는 경우 혹은 단측중재인의 부자격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PCA 사무총장이 관련 결정을 해야 한다.<sup>53)</sup>

중재판정부의 구성은 당사자들이 그 수와 선정방법을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요구로 PCA 사무총장이 중재인을 지정된다. 중재

51) MIGA, Rules of Arbitration for Disputes under contracts of guarantee, Art. 7.5.

52) MIGA, Rules of Arbitration for Disputes under contracts of guarantee, Art. 8.

53) MIGA, Rules of Arbitration for Disputes under contracts of guarantee, Art. 16. 중재인의 부적격을 문제로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그 이의가 수령된 이후 30일 이내에 사무총장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

판정부 구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즉, 신청인이 지정중재인과 의장중재인을 특정하여 피신청인에게 동의를 구하는 통지를 서면으로 행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그의 지정중재인과 함께 신청인에 의해 제안된 의장중재인에 대한 동의를 하거나 혹은 또 다른 의장 중재인을 제시하여 서면으로 답장을 보낸다. 이에 따라 답신을 수령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제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통지한다. 관련 당사자들간의 서면 통신은 PCA 사무총장을 통하여 전달하거나 혹은 직접 당사자에게 송부하면서 동시에 사무총장에게 사본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어느 경우이나 PCA 사무총장은 관련 통신의 기록, 보관자로서 행위하게 된다.<sup>54)</sup>

PCA 사무총장은 본 규칙에 따라 지정된 각 중재인들로부터 즉시 중재인지정의 승낙을 구해야 한다. 각 중재인이 15일 이내에 중재인 지정의 승낙을 하지 않는 경우 사무총장은 즉시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또 다른 중재인의 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sup>55)</sup>

중재판정부는 모든 중재인들이 그들의 중재인 지정을 수락하여 사무총장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날짜에 구성되며, 중재절차가 개시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중재판정부의 중재절차의 개시시점이전 혹은 첫 번째 회기에서 각 중재인들은 중재관련 중재인 선서문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sup>56)</sup> 만약 중재판정부의 첫 번째 회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중재인 선서문에 서명을 하지 않는 중재인은 중재인으로서 사임한 것으로 추정한다.

54) MIGA, Rules of Arbitration for Disputes under contracts of guarantee, Art. 58.1.

55) 지정된 중재인이 중재인 지정을 수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또 다른 중재인을 지정하여야 할 경우 그 지정 방법은 이전의 중재인 선정에 따른 방법으로 진행한다.

56) MIGA, Rules of Arbitration for Disputes under contracts of guarantee, Art. 14.2. 관련 중재인의 선서문은 다음과 같다. "To the best of my knowledge there is no reason why I should not serve on the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with respect to a dispute between \_\_\_\_\_ and the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A statement of my past and present professional, business and other relevant relationships (if any) with the parties is attached hereto. I shall keep confidential all information coming to my knowledge as a result of my participation in this proceeding, as the contents of any award made by the Tribunal. I shall judge fairly as between the parties and shall not accept any instruction or compensation with regard to the proceeding from any source except as provided in the Rules of Arbitration for Disputes under contracts of Guarantee of the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중재절차의 진행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이후 가능한 빠른 시기에 중재절차상 문제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을 명확히 하며, 관련 문제에 대한 당사자들의 견해를 구하기 위하여 예비적 자문을 위한 만남을 요구할 수 있다.<sup>57)</sup> 중재판정부는 본 중재규칙이나 기타 당사자들의 합의된 규칙으로 해결되지 않는 중재절차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 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신속한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중재판정의 집행을 유용하게 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서 당사자가 중재절차 중에 어느 때라도 중재판정부에게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적 조치의 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 같은 당사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중재판정부의 자체판단으로 임시적 조치나 기타의 조치를 권할 수 있으며, 다만, 임의보전조치의 소견기회를 제공한 이후에 임시적 조치나 그의 변경이나 취소 등을 권하거나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58)</sup>

중재판정부에 의한 중재판정이 내리기 이전에 중재절차가 중지내지 종결되는 경우는 다음의 3가지 경우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sup>59)</sup> 첫째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이후 중재절차 중에 당사자들간에 분쟁해결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이를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제시하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종료이다. 만약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이전이라면 PCA 사무총장이 당사자들의 서면 요구에 따라 중재절차의 중지 지시를 명령한다. 둘째, 일방당사자가 중재절차의 중지를 요구하고 타방당사자가 특정 기간이내에 반대의 제기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중지하게 된다.<sup>60)</sup> 이 경우에도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이전이라면 PCA 사무총장이 중재절차의 중재를 명하게 된

57) 특히, 의장중재인은 중재절차 구성을 위한 중재인의 정족수, 중재절차에 사용되는 언어, 항변의 횟수와 순서 및 기간의 제한, 제시 문서에서 요구되는 사본의 수, 서면이나 구두 중재절차에 관한 배제, 중재절차 비용의 할당방법에 대한 견해를 구한다. 본 규칙 제27조 1항 참조.

58) MIGA, Rules of Arbitration for Disputes under contracts of guarantee, Art. 47.3. 이 경우에도 당사자들이 별도로 관할법원에 적법한 사법적인 임의 조치를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59) MIGA, Rules of Arbitration for Disputes under contracts of guarantee, Art. 50, 51, 52.

60) 만약에 일방당사자의 중재절차의 중지 요구에 대하여 타방당사자가 반대의견이 제기된 경우에는 중재절차는 계속된다. 본 규칙 제51조 참조.

다. 셋째, 당사자들이 연속 6개월 동안 혹은 합의한 기간 동안 중재절차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재절차가 중지되었음이 추정되며, 중재판정부나 혹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이전이라면 PCA 사무총장이 당사자에게 통지한 이후 중재절차의 중지를 명한다.

이와는 달리 당사자들에 의해 분쟁내용의 설명이 완료되면 중재절차는 중재판정부에 의해 종료가 선언된다.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문이 제시되기 전에 예외적으로 중재판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나 확실한 특정 부분의 해명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재절차의 재개시되지 않는다.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은 모든 중재판정부에 제기된 문제를 다루면서 그 판정의 근거로서 이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문은 다수의견에 이의 제기 여부 혹은 의견이 다른 진술서의 중재인의 개인적인 견해를 첨부할 수 있다. 특히 중재판정문의 형식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중재인 모두의 서명과 서명일자가 각각 기재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재판정의 실효적인 집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재판정을 내린 중재판정부에게는 법적 집행력의 보장을 위하여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들을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행할 것이 요구된다.<sup>61)</sup>

그 외에 MIGA의 담보계약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부담이다. 중재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유형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PCA 사무총장 및 사무국의 수수료 및 행정비용으로서 사무총장이 중재판정부의 구성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 평가된 비용과 중재절차에 기인한 모든 직접적인 비용과 사무총장에 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된 필요경비를 포함한다. 둘째, 중재인들의 수수료와 발생된 비용이다. 관련 중재인들을 위하여 적용되는 요율은 달리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ICSID(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협약)에서 중재에 적용하는 요율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셋째, 그 외 중재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비용의 보상이다. 즉, 중재절차 중에 증인이나 전문가 등으로 중재에 소집되는 당사자 및 중재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임명된 당사자들로서 번역이나 해석 및 서기 등을 포함한다.

중재비용의 지급방법은 중재절차의 개시를 바라는 당사자들에 의하여 사무총장이 평가한 결정금액을 당사자의 선급금으로 각 당사자에게 요구된 금액의

61) MIGA, Rules of Arbitration for Disputes under contracts of guarantee, Art. 53.3.

50%씩을 수령하여 사무국은 중재인들, 증인, 전문가 등 관련 당사자에게 지급한다. 관련 지급 통화는 사무총장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통화로 지불된다. 특히, 중재절차에 관하여 당사자들에 의해 부담되어야 하는 발생한 비용의 분할은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결정한다.

### 3. MIGA 분쟁해결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첫째, 다자간투자보증기구(MIGA) 등에 의한 정치적 위험을 담보하는 서비스를 통한 리스크 회피는 기대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이용에 따른 절차적 복잡성이나 비용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대안적 위험관리방안으로써 무역보험제도에 의한 보험상품의 이용 등에 따른 저조한 활용이 문제로 제시된다.

국제적으로 신뢰성이 높은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해외투자에 따른 리스크관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피투자국의 이행력을 향상시키고 객관적인 분쟁해결을 지향함으로써 해외투자사업 추진이 더욱 용이해 질 수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MIGA의 보증을 활용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효과를 단언할 수는 없으나, 대규모 및 장기 인프라 자원개발 프로젝트 등을 수행할 때 MIGA 서비스에 의하여 정치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up>62)</sup>

둘째, MIGA의 협약에 따라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규칙을 포함하여 분쟁해결제도는 ICSID(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라는 특화된 분쟁해결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국제상설중재기관(PCA)에 의한 중재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MIGA의 담보계약에 관한 중재규칙(1990)의 경우 PCA가 1899년 설립되어 국가간 분쟁해결기관으로서 공적분쟁 및 사적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로서 활용되어 왔다. 특히 영토, 조약이나 인권의 분쟁을 포함하여 상사 및 투자분쟁, 양자 및 다자투자협정분쟁 등의 분쟁을 다루어왔다.<sup>63)</sup>

그러나 특화된 분쟁해결제도를 가지고 있는 ICSID를 그 산하에 두고 있는

---

62) 뉴시스, 'MIGA 서울시법사무소 출범', 2012. 6. 24일자 기사 참조.

63) PCA는 이 중에서 특히 양자간 협정 및 다자간협정(투자협정 포함)의 그 해석과 적용문제와 관련한 분쟁을 다루고 있다(www.pca-cpa.org 의 Cases 참조.).

세계은행으로서 MIGA의 분쟁해결제도는 특성화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지라도 ICSID의 분쟁해결제도를 연계하게 됨으로써 자체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셋째, 투자와 관련한 분쟁해결 중에서 조정이나 중재를 통한 합의의 일반적인 절차를 이행하여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분쟁해결제도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관련한 분쟁해결의 상당수는 조정이나 중재절차 도중에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분쟁해결을 합의함으로써 절차가 중지내지 종료된다. 예를 들어 투자분쟁해결의 대표적인 분쟁해결기관인 ICSID 분쟁해결의 사례<sup>64)</sup>를 살펴보면, 1972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분쟁해결이 완료내지 종료된 사건은 275건으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중재판정부나 단독중재인에 의한 중재판정이 이루어진 건수는 약 51%정도이며, 중재판정이 아닌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중재가 종료되는 경우가 약 25%에 이르고 있다. 나머지의 경우는 절차적 하자 혹은 관할의 문제 및 중재신청 예납금의 미이행 등에 의한 중재절차의 중지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투자분쟁과 관련한 사건은 2건이 존재한다. 이중에 한 건은 이미 종료된 사건으로 Colt Industries Operating Corporation과 한국정부간의 분쟁이었다. 당해 분쟁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분쟁이 종료되었다.<sup>65)</sup> 다른 하나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LSF-KEB Holding SCA and others와 한국정부(일명 론스타분쟁)간의 분쟁사건으로 2012년 12월에 사건이 ICSID에 정식 등록되었으며, 현재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어 중재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결국, 분쟁해결의 과정에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원활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것이 선호될 수 있을지라도 투자분쟁의 규모나 중대성에 비추어 합의에 의하여 분쟁해결과정 중에 중지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넷째, MIGA의 투자자 대위권 행사의 문제점을 고려할 수 있다. 투자자가 몰수나 환태환금지 및 내란 등의 투자위험에 대비하여 국내투자보험에 가입하거나, MIGA를 통하여 보상금을 받으면, 피보험자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에 대해서 갖는 청구권이 보험자에게 이전된다. 즉,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을 받은 보험금의 수익자가 가지는 모든 권리는 보험자가 대위한다. 이와 같은 대위권제는 보험계약 또는 법률에 의해서 발생한다.

64) <https://icsid.worldbank.org>, List of concluded cases 참조.

65) ICSID Case No. ARB/84/2.

그러나 투자자에게 대외변제를 행한 국가기관이나 MIGA와 같은 국제투자 보험기관은 투자자를 대신해서 ICSID 절차의 적격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ICSID의 규정에 따르면 본 센터의 관할권은 분쟁당사자들이 센터에 제기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동의한 분쟁으로서 체약국과 다른 체약국의 국민간에 투자로부터 직접 발생한 모든 법적 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sup>66)</sup> 이에 따라 다른 체약국의 국민이란 분쟁당사국이 아닌 체약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 또는 분쟁당사국이 아닌 체약국 국적을 가진 법인과 다른 체약국의 국민으로 취급한다고 합의한 법인을 의미한다.<sup>67)</sup>

그러므로 MIGA는 국제기관으로서 투자자의 국적국가나 국제기관이 대외변제를 위하여 투자자의 대위권자로서 분쟁의 당사자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ICSID 관할권 규정에 부합되는지는 논란의 여지를 갖는다.

## V. 결 론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해외투자시 다양하게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의 제거나 완화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신용도가 높고 영향력이 있는 MIGA를 활용함으로써 정치적 리스크로 인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

특히 국가 신용도가 낮거나 금융 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MIGA를 통한 리스크관리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유용하다.

리스크관리방안을 고려할 경우 국내의 무역보험공사의 보험 및 보증상품과 함께 국제적으로 저명한 MIGA의 서비스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담보하는 리스크의 종류와 범위를 고려하여 상호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하여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투자사업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제공하는 리스크

---

66) ICSID 제25조 1항.

67) 법무부, “ICSID 중재제도 연구”, 2006, p. 86. 공적인 투자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공적 조직체는 대위변제로써 ICSID 절차의 당사자 적격을 가질 수 없지만, 투자유치국이 대위변제를 통해서 권리양도를 승인하는 경우 대위변제자인 민간 보험자는 공적 조직체와 달리 투자자를 대위해서 ICSID 절차의 당사자 적격을 갖는다.

관리 서비스를 함께 보완적으로 도입하여 리스크관리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투자자의 MIGA 활용사례는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 MIGA서울사무소 유치를 통하여 국내의 해외투자자들의 국제적 위상을 증진할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MIGA의 신용과 국제적 저명도에 따라 MIGA에서 제공되는 정치적 리스크 관리가 보다 친숙하게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민 및 투자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투자보험과 함께 MIGA의 정치리스크 보험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국내서비스의 한계로 인식되었던 국제적 미약한 금융 경쟁력 및 지원한도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MIGA의 국제적 위상과 신용도에 따라 분쟁의 예방효과 및 사고확률의 저하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파생효과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MIGA의 분쟁해결제도가 가지고 있는 조정과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규정과 그 특성과 한계를 고려하여 국내의 해외투자자들이 MIGA의 보증제도를 국내의 무역보험제도와 함께 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개발도상국으로의 해외투자활동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강길환, “국제금융기관에 관한 이론적 고찰”, 경기교육논총 제5호, 경기대학교, 1996.
- 김상만, 국제거래법, 도서출판 두남, 2011. 2.
- 법무부, “ICSID 중재제도 연구” 2006.
- 서정두, 무역상무, 탐복스, 2011. 9.
- 오원석·김용일, “국제투자계약에 따른 위험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18권 제2호, 2008. 8.
- 오원석·이기옥, “턴키방식 플랜트계약의 실무상 유의점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53권, 2012. 2.
- 이태경 외 6인, “해외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방안 연구”, 지식경제부, 2012. 8. 31.
- 최명국, “FIDIC의 DBO 프로젝트용 표준계약조건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46권, 2010. 5.
- \_\_\_\_\_, “해외건설공사 분쟁에서 ODR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59권, 2013. 8.
- 황지현·박은옥, “국제투자분쟁에서 중재판정시 투자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59권, 2013. 8.
- Alexia Brunet and Juan Agustin Lentini, “Arbitration of International Oil, Gas and Energy Disputes in Latin America”,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Business*, 2007.
- Ibrahim F.I. Shihata, “The Settlement of Disputes Regarding Foreign Investment: The Role of the World Bank,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ICSID and MIGA”, *America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Review*, volume 1, 1986.
- MIGA, “MIGA: Helping Keep Sustainable Investments on Track”, *Dispute Resolution and Claims*, MIGA Brief, April 2013.
- \_\_\_\_\_, Annual Report 2012.
- \_\_\_\_\_, Convention, Establishing the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amended in November 14, 2010.

\_\_\_\_\_,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s Rule of Arbitration for Disputes Under Contracts of Guarantee, 1990.

Paul E. Comeaux, N. Stephan Kinsella, "Reducing Political Risk in Developing Countries: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Stabilization Clauses, and MIGA & OPIC Investment Insurance", Digest of Commercial Laws of The World, *New York Law School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1994.

## ABSTRACT

### A Study on the Dispute Resolution of MIGA in the Investment Guarantee for Developing Countries

Yu, Byoung Yook

The world is significant increasing investment volume into developing countries from foreign investors. Foreign financial capital is searching in interesting place among the emerging market. However foreign investors put still their experience in the economical and social crisis with political risks in the host countries.

MIGA entered into the political risks insurance market which has one of the basic matter of sponsored the private investment guarantee programs.

They put guarantee or covering risks of currency inconvertibility, expropriation, breach of contract and political violence.

In the case contracts of guarantee concluded between investor and MIGA which are disputes in relation to such MIGA service contract, it should be settled by negotiation,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under the convention establishing the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MIGA). All disputes within the scope to states and investor of MIGA members shall be settl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out in the convention.

Recently, MIGA is opening the office in Seoul to strengthen joint efforts between MIGA and Korea. It will be a good chance to consider sustainable improvement and dispute solutions for emerging countries in foreign investment to the korean investors.

Key Words :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Political Risks,  
Developing Country, Foreign Investment, Arbitration